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상인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김행부제출】

검 토 보 고 서



2024. 7.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상인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4. 7. .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상인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달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 제출일자: 2024. 7. 5.
- 회부일자: 2024. 7. 5.
- 검토기간: 2024. 7. 5. ~ 7. 9.(5일간)

2. 제안이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광역시장이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 쇠퇴한 상인2동 지역을 재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명 :  스마일링 스타트업 상인2동
- 사업 위치 및 면적: 달서구 상인2동 일원/502,504m²
-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 비전: 넘치는 활력으로 함께 웃으며 채워가는 新 골목상권
 - 목표
 - 골목상권 확산의 중심지
 - 다양한 사람·기회를 만나는 환경
 - 주민·청년·상인이 전문가와 함께 성장하는 상업환경 구축
 - 추진방향: 골목상권 특성화사업,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 주요 사업계획안
 - 골목상권 특성화사업
 - 창업 상생교류거점, 창업기반 거점 조성
 - 주민, 예비창업자, 상인들의 창업 준비·소통·교류공간 및 활동 거점 공간 조성
 - 창업지원을 통한 시범상가 및 어르신일자리 거점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 일자리 창출
 - 자생적 상권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 + 공공 + 대학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력 TF팀 추진
 - 골목상권특화가로 조성
 - 상인역, 롯데시네마, 대동시장, 월배공원 등 사업대상지 내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특화가로 조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 민들레어린이공원 주차장 복합화 사업
 - 지하 주차장, 지상 공원 리모델링 복합 조성하여 주차수요 대응 및 공원 편의시설 확대
 - 상권 보행환경 개선사업
 - 주요도로 중심으로 스마트 폴·보안등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 정온화를 통한 상권 보행환경 개선

- 폭염대비 온도저감을 위한 골목길 열차단 포장, 스마트 쉼터 설치로 안전한 상업환경 조성

○ 청년사회주택 조성사업(민간)

- 청년주택 건립, WORK + LIVE + PLAY 복합거점 조성
- 어린이 및 청소년 SOC 조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추진경과/일정

- 2022. 12. ~ 2024. 6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작성
- 2024. 7월 : 구의회 의견 청취
- 2024. 8월 : 주민공청회 개최
- 2024. 9월 : 공모신청
- 2024. 9. ~ 11월 : 대구시, 국토부 평가
- 2024. 12월(예정) : 사업선정·발표(국토부)

4. 참고사항

- 사업위치도 : 붙임 1
- 활성화계획 구상도 : 붙임 2
- 관련법령 : 붙임 3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쇠퇴되어 가는 상인2동 일원의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계획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4. 7. 5.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본 계획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중인 상인2동 일원 502,504㎡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240억원(국비 120, 시비 60, 구비 60)으로 창업 상생 교류 및 창업기반 거점 조성, 골목상권 특화가로 조성, 민들레어린이공원 주차장 복합화 사업, 상권 보행환경 개선 사업, 청년사회주택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상인2동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 지원정책 추진으로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새로운 마을로 재창조하려는 계획임.
- 따라서 본 계획은 쇠퇴 지역인 상인2동 골목상권 활성화와 가로환경개선 및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성공적인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골목상권 특성과 사업		153.3억원
1 창업 상생교류거점 조성		26.40억원
1-1 HW	창업 상생교류거점 조성(23.2억) : 창업 교류거점, 교육 및 실습 공간, 제조공간 등	
1-2 SW	상인, 주민역량강화/ 상생교류 TF팀 운영 등 (3.20억)	
2 창업기반 거점 조성		66.65억원
2-1 HW	파일럿싱가 (18.45억) : 청년·에비창업자들의 테스트 베드 시범싱가	
2-2 HW	창업 오픈캠퍼스(23.40억) : 청년·지역주민의 창업 커뮤니티공간 및 창업지원 교육 공간 등	
2-3 HW	미르신 일자리거점(23.20억) :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 카페 등 거점 조성	
2-4 SW	창업역량강화, 교류프로그램(0.8억)/시니어 취업교육(0.4억)/어르신 건강케어(0.4억)	
3 골목상권 활성화가로 조성		30.00억원
3-1 HW	골목상권 활성화가로 조성(20.20억) : 거점들을 이어주는 활성화가로 미디어물, 로고젝트 등 조성	
3-2 HW	골목정보 환경개선사업(5.00억) :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골목경관개선(집수리) 50호	
3-3 SW	집수리교육(1.20억), 주민제안사업(4.80억)	
4 대구형 청년 사회주택 연계사업(민간)		240.00억원
연-1	청년주택 및 창업 거점 : 청년 사회주택, 코워킹스페이스, 공동창업공간 조성사업, 상생싱가 등	
연-2	어린이 및 청소년 SOC복합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청소년 지원센터, 원전돌봄 지원센터 등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95.95억원
4 공원 주차장 복합화 사업		84.35억원
4-1 HW	민들레 어린이공원 복합화 사업(74.70억)	
4-2 HW	민들레 어린이공원 조성(6.75억)	
4-3 HW	스마트주차장 조성(2.90억)	
5 상권 보행환경 개선사업		11.60억원
5-1 HW	교통정돈화(5.60억) : 안전시설물 및 조경,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5-2 HW	스마트 안전망 구축(6.00억) : 스마트 폴·스마트 보안등 설치, 노후 CCTV 및 보안등 교체	
6 폭염대비 재난대응형 사업		30.60억원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6.10억원
7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6.10억원
7-1 SW	현장지원센터 운영(4.8억)	
7-2 SW	거점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수립(0.5억)	
7-3 SW	모니터링 성과자료개발 및 모니터링 조사(0.8억)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일원

• 유형 :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형)

• 기간 : 2025~2028년 (4년)

• 면적 : 502,504㎡

• 사업비 : 240.0억원(국비 120.0억원/ 지방비 120.0억원)

※ 총 사업비 : 493.4억원(매출을 240.0억원/ 자체지방비113.1억원/민간 243억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전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